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200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2. 3.
판 결 선 고	2016. 2. 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781,320원, 지방교육세 1,729,770원, 농특세 790,700원, 합계 21,301,790원의 부과처분과 취득세 24,239,880원, 지방교육세 2,232,500원, 농특세 1,020,520원, 합계 27,492,9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2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면 [redacted]리 138-29 외 2필지, 같은 리 138-28 외 3필지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8,781,320원, 지방교육세 1,729,770원, 농특세 790,700원, 합계 21,301,790원의 부과처분과 취득세 24,239,880원, 지방교육세 2,232,500원, 농특세 1,020,520원, 합계 27,492,9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인 2016. 1. 20. 위 각 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외형상 잔존할 뿐인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에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익을 결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형

판사 우인선

판사 권세진